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ustralia: Considering how CbC reporting may affect globally mobile workforce](#)

2016년 1월 1일 개시 과세연도부터 호주에서는 BEPS 도입에 따른 국가별 보고서(CbCR) 제출의무 규정이 시행됩니다. 호주 과세당국은 다국적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가별보고서 내용 중 각 국가별 법인 임직원 수 또는 종업원 수 보고사항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별보고서상 모든 국가의 해당법인 별 임직원의 수가 기입됨에 따라 기업의 인사 및 주재원 담당부서는 기업 내 세무 및 이전가격 담당부서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납세자의 판단 하에 국가별 보고서 작성 시 "정규직(full-time)" 직원의 판단기준에 논란이 될 수 있으니 가장 합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장기 휴가(Long-term Leave)자에 대한 판단;
- 계약직 또는 단기 직원에 대한 판단;
- 타 지역 또는 글로벌 사업 역할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판단;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3 April 2017

KEY CONTACTS

[강길원 전무이사\(본부장\)](#)

(Tel: 02-2112-0907)

[김상훈 상무이사](#)

(Tel: 02-2112-7939)

[백승목 상무이사](#)

(Tel: 02-2112-0982)

- 직원이 같은 해에 2개의 국가에 임직원으로 집계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

상기 내용 이외 계약직 직원, 비정규 직원 또는 외주 직원 등을 정의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국가별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세무상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위험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국가별보고서를 통해 보고된 기업들의 세부정보에 관한 정보공유범위는 특별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호주 과세당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에 제출된 국가별 보고서는 타 국가 과세당국의 요청 시 정보가 교환되며, 호주 과세당국 또한 타 국가의 과세당국으로부터 국가별보고서를 요청하여 정보를 공유 할 수 있습니다. 동 보고서는 국가 내 지역 혹은 관할 과세당국에게 공유 될 수 있습니다.

국가별 보고서에 담은 중요한 정보가 다른 정부기관에 활용될 경우 예컨대 퇴직연금의 납부여부, 고용관련 원천징수 여부 확인용 정보로 활용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Transfer Pricing Audits Enriched China by \\$1.48B in 2016 : Official \(Bloomberg BNA Report 17.03.23\)](#)

중국 과세당국은 2016년 동안 중국 내에서 254건의 이전가격 조정을 통해 과세표준금액을 약 9.5 billion 위안(1.4 Billion USD) 만큼 증가시켜 세수를 확보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과세당국 소속 이전가격전문가 Zhang Yang은 캘리포니아 주 팔로알토에서 개최된 태평양 조세 컨퍼런스에서 이전가격세무조사 통계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공했습니다.

- 해당연도: 2015년, 이전가격조정 건수: 198건, 총 금액: 11.6 billion 위안(건당 평균 58.45 million 위안)
- 해당연도: 2014년, 이전가격조정 건수: 257건, 총 금액: 7.9 billion 위안(건당 평균 30.68 million 위안)
- 해당연도: 2013년, 이전가격조정 건수: 211건, 총 금액: 4.6 billion 위안(건당 평균 21.77 million 위안)
- 해당연도: 2012년, 이전가격조정 건수: 175건, 총 금액: 4.6 billion 위안(건당 평균 26.2 million 위안)

- 해당연도: 2011년, 이전가격조정 건수: 207건, 총 금액: 2.4 billion 위안(건당 평균 11.8 million 위안)

세무조사

Zhang에 의하면 중국과세당국은 이전가격관련 세무조사 진행절차를 중국전역에 걸쳐 표준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과세당국 관계자는 2005년이후 중국 세무국은 전국단위로 조세회피방지 시스템을 도입해왔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지역 세무당국이 세무조사건수를 보고하기 위한 체계이며 이전가격이나 기타 세무조사 건을 시스템에 등록 및 종료 하기 위해선 중국과세당국 본청의 승인을 요합니다. 중국과세당국의 목표는 조사절차를 정형화하는 것, 조사 종료건 대해 조사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세무조사 노력을 집약적으로 시행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조사를 조율하며 지방청과의 중복조사 등을 피하는 것입니다. Zhang은 "중대한 사항의 조건에 부합하는 이전가격 조사 건에 대해서는 중국과세본청의 전국단위 전문가들을 모아 최종결정을 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Japan Receives 151 Requests For Advance Pricing Agreements \(Bloomberg BNA Report 17.03.23\)](#)

일본의 과세당국은 2017년 6월30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6 사업연도 동안 151개의 APA신청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상호합의 담당총괄 Atsushi Komori에 의하면 최근 사업연도에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수준의 요청이고 2012년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주목할만한 증가라고 전했습니다. . Komori는 지난 3월 9일 캘리포니아 주 팔로알토에서 열렸던 태평양 조세 컨퍼런스에서 "일본과세당국 NTA는 2015년도에 149건, 2014년도에 152건, 2013년도에 131건, 그리고 2012년도에 112건의 APA를 요청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1987년에 일본은 APA를 최초로 도입한 국가들 중 하나였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처음으로 이전가격 협상을 벌인 나라들 중 한 국가였습니다.

OECD 지침

Komori는 "APA관련 사전미팅제도(Pre-Filing)가 의무사항은 아닐지라도, APA승인신청서 제출 전 과세당국 관계자와 질의형식 성격의 사전미팅제도 절차를 강력히 권고한다." 고 전했습니다. 일본 지역세무국은 과세본청소속 상호합의 팀과 긴밀하게 협업을 통해 제출된 APA신청서류들을 심사합니다. 일본과세당국의 APA 심사 요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Komori는 "각 국가의 과세당국이 이전가

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고 언급하며 이전가격 이슈로 인한 국제적 이중과세의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APA 심사는 “OECD이전가격 지침서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Komori는 전했습니다.

[Back to t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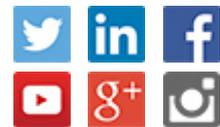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17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